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시행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세입이 없는 것을 감안 지속적인 투자 사업이 불필요함으로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해 일반회계로 편성 조치 하고자 함

2.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5조 2항(특별회계)

3. 주요골자

- 부산광역시사하구장림유수지이설및공유수면매립사업 조례를 폐지함

4. 검토의견

본 조례 폐지건은

- 장림유수지 이설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매각등 제반사항이 완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투자활동이 불요하고 잉여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함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위 조례 폐지는 적법타당 하다고 사료됨.

사회도시전문위원 정 금 배